
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-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	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재간접형)
	제2조(용어의 정의) 1. ~ 7. 생략 8. 가. ~ 라. 생략 마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바. 생략	제2조(용어의 정의) 1. ~ 7. 작동 8. 가. ~ 라. 작동 마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재간접형) 바. 작동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이 투자신탁은 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”으로 한다. ② 1. 생략 2.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금-파생형) 3. ~ 6. 생략 ③ 1. ~ 17. 생략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이 투자신탁은 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재간접형)”으로 한다. ② 1. 작동 2.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금-파생재간접형) 3. ~ 6. 작동 ③ 1. ~ 17. 작동 (신설) 18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(신설) 19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(신설) 20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(S-T 및 S-P 관련 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보다 판매회사보수율이 낮고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
	제10조(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1. ~ 17. 생략 ②~⑤생략	제10조(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1. ~ 17. 작동 (신설) 18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

		(신설) 19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(신설) 19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②~⑤좌동
	제16조(투자목적) 이 투자신탁은 금 관련 파생상품(금선물)을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6조(투자목적) 이 투자신탁은 금 관련 파생상품(금선물) 및 금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1. 금관련 특별자산에는 50%이상을 투자한다. 이때 금관련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10%를 초과한다. 2. ~ 3. 생략 4.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미만으로 한다. 5. ~ 6. 생략 7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야 한다.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1. 금 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금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으로 한다. 이 경우 금 관련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40%이하로 한다. 2. ~ 3. 좌동 4.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 5. ~ 6. 좌동 7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
	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1. ~ 3. 생략 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. ~ 7. 생략 8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. 가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같은 투자신탁(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투자신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 나. ~ 라. 생략	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1. ~ 3. 좌동 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. ~ 7. 좌동 8. 삭제 9. 가. 삭제 나. ~ 라. 좌동 (신설) 10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(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(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같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. 가.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(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%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하는 경우

		나.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.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%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)에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%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하는 행위 마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%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 (신설) 11. 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(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) 또는 투자중개업자(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)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--	--	---
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1. ~ 5.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7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 ~ 5. 생략 ③제19조 제2호 본문,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가 목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④생략	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1. ~ 5. 작동 (신설) 6. 투자신탁 유형변경일로부터 1월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7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,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 ~ 5. 작동 ③제19조 제2호 본문,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 본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④작동
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 ③ 1. ~ 17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5.82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45 2.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3.58 3.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2.94 4.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2.29 5.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1.65 6.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1 7.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0.86 14.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	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 ③ 1. ~ 17.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50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0 2.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1.0 3.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0.7 4.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0.5 5.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0.3 6.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0.1 7.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6.00 14.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0 (신설) 18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50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5.50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 (신설) 19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50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75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 (신설) 20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50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2.30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
제40조(판매수수료) ①생략 ② 1. 생략	제40조(판매수수료) ①작동 ② 1. 작동

2.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5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해당사항 없음 3 ~ 5. 생략 ③생략 ④ 1.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EU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5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해당사항 없음 2. 생략 ⑤생략	2.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5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해당사항 없음 3. ~ 5. 좌동 ③좌동 ④ 1.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EU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5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해당사항 없음 2. 좌동 ⑤좌동
제41조(환매수수료) ①생략 ② 1.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EU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해당사항 없음 2. 생략	제41조(환매수수료) ①좌동 ② 1.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EU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A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해당사항 없음 2. 좌동
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 1. ~ 4. 생략 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6. 생략 ②~③생략 ④ 1. ~ 4. 생략 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에서 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17시 경과	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 1. ~ 4. 좌동 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재간 접형) 6. 좌동 ②~③좌동 ④ 1. ~ 4. 좌동 5.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재간 접형)에서 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

	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에 전환처리 한다.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6. 생략 ⑤~⑨생략	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3영업일(17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4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4영업일(17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5영업일)에 전환처리 한다.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6. 좌동 ⑤~⑨좌동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투자설명서	수익률 변동성: 34.19%	수익률 변동성: <u>42.06%</u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	

2. 변경(예정)일: 2026년 07월 30일(목)